

□ 사건의 경과

사 건 번 호	2004가단32401
원 고	000
피 고	00생명보험 주식회사
소 제기일	2004. 6. 30.
판결 선고일	2005. 10. 11.
쟁 점	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이 보험금 지급사유인 뇌경색인지 아니면 일과성 뇌허혈발작에 불과한가.
결과 (주문)	원고 패소
확정 여부	원고가 항소하였다가 항소취하함으로써 원심 확정.

□ 판결 요지

○ 사안의 개요

- 원고는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뇌경색 등으로 진단확정시 진단 및 치료자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 체결.
- 원고는 의식혼미 및 사지마비 증세로 응급실에 갔는데, CT, MRI, MRA 촬영에서는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였음.
- 담당의사는 일응 뇌경색으로 보고, 원고에 대하여 혈전용해제 치료를 등을 실시하였음.
- 원고는 입원 후 약 12일 만에 퇴원, 현재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상 없음.

○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

원고는, 담당의사가 원고를 뇌경색으로 진단확정하였으므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, 피고는 원고의 증상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은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.

○ 법원의 판단

① 뇌경색의 경우 3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것이 통상적인데, 원고는 비교적 단기간인 입원 12일만에 증상의 호전이 있어 퇴원하였고, 이후 원고에게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의심할 만한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, ② 원고에 대한 2004. 3. 19.자 CT, MRI 촬영뿐만 아니라 혈전용해제 치료 후인 2004. 3. 22.자 CT, MRI, MRA 촬영 모두에서 뇌경색을 나타내는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, ③ 뇌경색이 발생한 후 24시간 내지 48시간 안에 실시한 CT 촬영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을 수 있으나 MRI 촬영에서는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, 원고에 대한 2004. 3. 19.자 MRI 촬영에서도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, ④ 뇌경색에 의하여 혈관 폐쇄와 관련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발생하였다면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였을지라도 뇌경색 발생 후 1, 2일 이내에 시행되는 CT, MRI, MRA 촬영에서 뇌 병변 등이 관찰되는 것이 보통인데, 원고에 대한 2004. 3. 22.자 CT, MRI, MRA 촬영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, ⑤ 발병 직후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등 임상 증상이 뚜렷하였으나 발병 직후 혈전용해제 투여로 인하여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즉시 소멸되었고 이때 발병 후 처음 시행된 MRI 등 정밀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면 이는 혈전용해제의 투여에 의하여 뇌경색이 치료되어

MRI 등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을 가능성보다는 뇌경색증이 아닌 일과성 뇌 허혈 발작에 의한 증상이 자연적으로 완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담당의사가 원고에 대하여 뇌경색으로 진단하고 뇌경색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전용해제 치료를 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뇌경색으로 진단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.

□ 판결의 의미

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'뇌경색 진단확정'의 의미를 밝힘.